

# 산림 의정서 제정협상 대응방안 마련

## -브라질 리우환경회의 선언에 따라-

### 1. 추진배경

#### 가) 산림자원의 중요성 인식

○ 산림면적의 지속적인 감소

- 인류의 농경생활이 전에는 지구상에 약 62억ha의 산림이 존재하였으나 '90년 현재 40억ha에 불과함 (지구상 육지 면적 134 억ha의 30%)

-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산림벌채로 매년 17백만ha의 열대림이 파괴되고 있음 (World Watch Institute, 1992)

- 현재와 같은 속도로 진행한다면 21세기 초에는 열대산림이 뉴기니아, 자이레분지, 브라질의 아마존 서부, 가이아나 고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라질 전망 (Norman Myer)

○ 산림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재인식

- 임산물 생산기능 : 목재, 수실, 약용식물 등의 생산

- 온실가스흡수원 : 목재 1톤 생산 시 CO<sub>2</sub> 1.6톤 흡수, 산소 1.2톤 방출

- 생물다양성의 보고 : 생물종의 약 50% 이상이 열대산림에 부존

\* 지구상에는 500만의 생물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(분류된 생물종 수 140만종), 열대림에 50% 이상이 분포하고 있으나 매일 140종이 멸종되고 있음

- 이외에도 산림은 대기오염물질의 정화, 수자원 공급, 토양침식의 방지 등 주요한 생

#### 태적 기능 수행

◇UNCED 회의가 브라질에서 개최된 이면에는 세계생태계의 보고인 아마존 열대림이 브라질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임

#### 나) 산림원칙성명의 채택배경

○ 4차에 걸친 준비회의에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의견대립

- 선진국 : 산림의 보전측면을 강조, 법적 구속력을 갖는 「산림의정서」 (Forest Protocol) 채택을 강력 주장

- 개도국 : 자국의 경제개발을 위해 산림벌채가 불가피하므로 목재수출 감소, 산림보호 의무부담 가중 등을 우려 강제성 있는 법규범 제정 회피

○UNCED에서는 선·개도국간 입장차 이로 합의가 어렵게 되자 쟁점사항을 절충시켜 완화된 표현으로 합의된 「산림원칙성명」 채택

- 「전 세계 산림의 경영, 보전 및 지속개발에 관한 제원칙 성명」

(Non-legally binding authoritative statement of principles for a global consensus on the management,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all types of forests)

- 그러나 산림원칙성명 전문 제 4조에는

세계적 합의를 반영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각국은 제원칙의 조기이행과 산림문제에 대한 추후 국제협력(국제협약제정등)을 보장하기 위해 원칙의 적정성을 계속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

- 1997년 유엔총회 및 CSD의 후원하에 검토회의를 개최키로 예정되어 있는바

- '94~'96년 기간중에 산림의정서제정을 위한 후손논의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'97년을 전후해서 타결될 전망임

#### 다) 산림원칙성명의 주요내용

○산림개발의 주권적 권리인정 및 타국환경에 악영향 방지

(원칙 1조(a) 및 2조(b))

○산림자원은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사람들의 사회적, 경제적, 생태적, 문화적 및 정신적 요소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경영체제확립

(원칙 2조(b), 4조)

○산림정책을 국가정책에 우선반영 및 투자유인조치강구

(원칙 제5조(a), 9조(c), 13조(d), (e))

○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국가지침개발수행(원칙 8조(d))

○산림환경비용과 편익을 산림정책 및 시장기능에 반영

(원칙 제6조(c), 13조(c))

○산림면적의 확대, 임업생산력의 유지증진 및 인공림의 적극조성

(원칙 6조(d), 8조(a) 및 (b))

○산림개발에 따른 산림영향평가실시(원칙 8조(h))

○산림생태계에 해로운 오염물질의 규제(원칙 제15조)

○개도국의 산림보전 및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에 재정, 기술지원

(원칙 1조(b), 7조(a) 및 (b), 8조(a) 및 (c), 9조(a), 10조, 11조)

○생물유전자원의 보전강화 및 생명공학제품의 기술과 이익의 상호합의 하에 배분(원칙 8조(f) 및 (g))

○국제법 준수 범위내에서 무역장벽의 제거등 자유로운 임산물 무역촉진

(원칙 제13조(a), (b) 및 14조)

○산림보전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연구, 교육 및 국제협력의 강화

(원칙 제3조(b), 12조 (a), (b), (c))

## 2. 산림의정서 내용전망

### 가) 개요

○향후 논의될 산림의정서 제정협상은 산림원칙성명을 토대로 진전될 것임

○산림의정서의 주요내용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중시하여 산림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경영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수단 확보를 중심으로 구성될 것임

○산림의정서 제정협상시 주요쟁점 사항으로는 자원보유국(개도국)에 대한 산림보전의무강화와 선진국의 대 개도국 기술지원 및 재정부담문제가 현안사항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

### 나) 주요내용 전망

○산림의 다중적 기능 확보를 위한 국제적인 산림보전 및 관리기준 마련

○산림보전과 지속가능한 경영의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제출 의무화

○산림의정서 규정이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(monitering) 제도도입

○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 강화

- 개도국의 산림보전 및 지속가능한 경영

확보를 위한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체계 마련

○각국의 산림면적 감소에 따른 규제강화 및 산림의 타용도전용에 따른 산림영향 평가실시

○지속가능하지 않은 방법으로 생산된 임산물에 대한 교역규제

### 3. 최근의 국제적 동향

#### 가) 세계산림회의 논의동향

○회의명 : Global Forest Conference

○일 시 : '93. 2. 17~2. 20

○장 소 : 인도네시아 반등

○참가국 : 51개국 350여명

○회의성격 : UNCED 이후 개최된 최초의 세계산림회의임

○주요논의 내용

-UNCED회의에서 채택한 산림원칙 및 의제21의 후속이행조치논의

-모든 산림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지구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충실향 이행과 세계적인 협조체제구축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착수 촉구

-CSD에서 산림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다루어 줄 것을 건의

-유엔 사무총장에게 UN체제하에서 세계 산림문제를 다룰 별도의 세계 산림위원회 설립 촉구

#### 나) 세계산림위원회구성논의동향

○미국 Wood Hole Research Center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제안

○명칭 : 산림과 지속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

(World Commission on Forest and Sustainable Development)

○목적 : UNCED회의시 합의사항의 조기이행을 위한 국가간 이견조정을 위해 기존의 유엔기구와 별도의 독립기구설치

○추진경위 : 3차례 결친 논의를 통해 조직위원회 구성

-1차회의 : '92년 7월 조직위원회 구성 (이태리 로마)

-2차회의 : '92년 11월 위원회 지침, 사업계획초안채택(캐나다 오타와)

-3차회의 : '93년 4월 지침, 사업계획, 전략승인(인도 뉴델리)

\* 의장 : Ola Ullsten (현 주 이태리 스웨덴 대사, 전 스웨덴 수상)

○설립전망

-조직위원회가 UN사무총장 CSD, UNEP 등 관련국제기구 및 주요산림보유국과 협의중으로서

-UN에 공식제안하여 유엔사무총장이 총회에 제안, 의결되면 설립 가능

-설립취지가 UNCED회의시 산림분야 합의사항의 이행관련, 국가간 이견 조정, 국제협력강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설립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으로 전망됨

#### 다) 국제열대목재기구 (ITTO) 논의동향

○유엔무역개발위원회 (UNCTAD) 후원하에 제정된 국제열대목재협정 (ITTA :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Agreement)

의거 '83년에 설립

-우리나라의 경우 '85. 6. 25 가입, '93년에 161천불 분담

○설립목적 : 열대목재의 생산·소비국간 목재무역 및 기술협력증진

○국제열대목재협정 (ITTA) 개정협상

-1993년에 제정된 ITTA가 '94. 3월에

종료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후속협상이 진행중에 있음

- 개도국은 현재 열대림에 국한하여 적용하고 있는 있는 ITTA가 자국 목재 생산에만 제약을 가져오는 것으로 불합리 하다고 보고 앞으로 UNCED 정신을 반영, 한대·온대림을 포함하는 새로운 국제목재협정체결을 주장 (ITTA : International Timber Trade Agreement)

- 선진국, 특히 일본은 추가 재정부담을 우려 새로운 기구설치반대

\* 현재 ITTO는 중립적인 입장, NGO는 개도국을 지지하는 입장이나 과거 ITTA회의가 7년이나 결린점을 고려할 때 쉽게 타결될 것 같지 않음.

- '93. 11월중에 일본에서 그리고 '94년 1월중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열대목재 소비국으로서 일본과 보조를 같이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국제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음

#### 4.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

##### 가) 국내임업정책

○ 산림원칙성명은 산림보전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 국내 임업정책 또한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어 산림의정서가 제정되더라도 총괄적인 면에서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

○ 다만, 경제임업과 환경임업의 육성을 축으로 하는 국내 임업정책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정책적 배려 요청

- 1인당 관리면적(국유림) : 한국 1,480ha, 일본 410ha, 구서독 240ha

○ 산림의정서 채택시 산림면적 감소에 대

한 규제가 예상되나 아국의 경우 경제개발 과정에서 연간 약 7천ha의 산림면적 감소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산업 및 주택 등 타용도 전용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

- 영국, 독일 등 선진국에서와 같이 유휴 농지 산림조성 등

##### 나) 국내목재수급

○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'92년말 현재 6,464천ha로서 전국토의 65%, 세계 산림면적의 0.16%이며 1인당 산림면적은 0.15ha임 (세계평균 0.73ha)

- 그동안 산림녹화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산지는 푸르러 졌으나 아직은 30년생 이하 어린나무가 대부분으로서 산림자원이 매우 빈약한 실정임

- ha 당 자원량( $m^3$ ) : 우리나라 42, 세계 평균 80, 독일 266, 일본 124 등

○ 우리나라 세계 3위의 목재수입국으로 '92년 현재 목재자급율은 12%에 불과하여 연간 19억불에 달하는 외화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며

○ 목재수요량은 앞으로 목재자급율은 60%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

○ UNCED 이후 자원보유국의 벌채량 감소 및 원목수출규제가 심화되어 목재값이 급등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진전될 전망임

- 벌채량감축(마련사라와크주) : ('92)

1,850→('93) 1,600만  $m^3$  (14%감)

- 목재값

• 라왕 : ('92. 6) 169→('93. 6) 412불/ $m^3$  (144%증)

• 미송 : ('92. 6) 122→('93. 6) 247불/ $m^3$  (102%증)

○ 목재값 상승에 따른 국내임산업의 경

영악화와 제품값 상승요인으로 작용  
 -원목값 25%상승시 제조원가 : 합판  
 10.8%, 제재목 16.8%

○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목재자원의  
 안정적 확보정책수립이 요청됨.

### 〈목재수급실적 및 전망〉

단위 : 천㎥

구 분	1992	2000	2010	2020	2030	2040
수 요 원 목	9,182	15,100	21,000	22,500	23,500	23,500
공 급	내 재	1,123	2,542	4,787	7,530	10,852
	외 재	8,059	12,558	16,213	14,970	12,648
원목자급율 (%)	12	17	23	33 -	46	59
(외화지출(억불)	19	-	-	-	-	-

## 5. 국내대책

### 가) 산지이용체계재편

○UNCED정신에 부합하는 보전과 개발의 조화있는 산지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협행의 입목도와 경사도에 의한 물리적 구분방식에서 탈피, 입지조건과 이용목적에 따라 산지이용체계재편

○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·관리를 위한 산림관리의 일원화와 산림관리 지침의 제정  
 ○산지의 체계적 보전과 개발을 위한 산

지관리계획의 수립추진 등

### 나) 산림의 타용도 전용 억제

○산지이용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는 대폭완화하여 산지이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되 매수임야의 사후관리 등을 강화하여 산지소유제도를 확립하고 임야투기방지

○목재자원의 안정적 공급 및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보전임지의 타용도 전용은 최대한 억제

○유휴토지의 산림으로 전환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

### 산림은 소음을 감소시켜 줍니다

- 나무의 잎과 줄기에 부딪힌 소음의 소리가 활동에너지를 잊게되어 소음이 현저하게 감소됩니다.
- 50m폭의 숲은 소음을 10~15db이나 줄여준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.